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과 승인)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분량 1페이지 이내 \*기한: 4.11(금) \* 기본 글자포인트10, 줄간격130%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공간계획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이 두 계획은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계획의 목적, 법적 효력, 수립권자 및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에 위치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다. 이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행정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며, 정책적 유도성과 종합성이 강조되는 행정계획이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방향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복지,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하위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토지이용 규제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변경 등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명확히 구분된다.

수립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가지며, 시·도지사는 자체 수립 및 결정이 가능하다. 일반 시·군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지 않으며, 인구 10만 명 이하이거나 전 구역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입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또는 도지사 직권으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입안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계획의 수립절차 역시 두 계획 간 차이가 존재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30일 이내에 청취한 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수립된 계획은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일반 국민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도 기초조사를 통해 수립되나, 이때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청회 개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수는 아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제안권을 가진다. 입안제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산업유동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및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가 완료되면 결정 내용을 지형도면에 표시하고 이를 고시하는 지적고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고시일이 효력 발생 기준일이 되며, 해당 계획은 외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 발생 후에도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지정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공간계획 체계 내에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적 유도성과 장기성을, 도시·군관리계획은 실효성과 법적 강제성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계획의 목적과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도시계획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